

총리령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신용등급·연체기간”을 “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, 연체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신용등급 및”을 “신용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)	제3조(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)
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·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(이하 “신용카드회원등”이라 한다)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(이하 이 조에서 “각종요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	1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<u>신용등급·연체기간</u>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: 각종요율을 연율(年率)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	가. ----- ----- - <u>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연체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	나. -----

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 적용되는 <u>신용등급 및 연율로 환산된</u> 각종요율: 신용카드회원에 게 개별 통보 다. (생략) 2.·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<u>신</u> <u>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</u> <u>및</u> 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